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선 람 | 기관의장 |
| | |

제902호 2012. 7. 2.(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5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 ----- 1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16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4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 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716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 25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 | | |
|--|-------|----|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717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 ----- | 27 |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719호 폐기공인 공고 | ----- | 29 |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725호 신조 공인 공고 | ----- | 30 |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731호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공고 | ----- | 32 |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73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 ----- | 3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7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5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특화거리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7.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장소
8.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거주세대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는 물론 장소와 범위에 대해서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 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7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5.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6.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해소 홍보 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3. 재정 부담능력
4. 책임능력·공신력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년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

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장비는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7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이하 "순환버스"라 한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이하 "개발지역"이라 한다)"이란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공사 등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통행자"란 제2호의 구역을 통행하는 현지 주민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순환버스는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산

하 기관에서 운영하게 하거나 임차 또는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환버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인원,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의거 순환버스를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주체인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 ① 운행노선은 개발지역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하되 일반버스(마을버스 포함)노선과 중복되지 않게 한다.

② 구청장은 개발지역내에 운행노선을 정하고 간이 정류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개발지역의 현지주민으로 제한한다.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는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운행범위) ① 순환버스 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17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하되, 이용객이 많고 적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② 운행시간의 간격은 구청장이 정하되, 심야시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당수의 주민이 운행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운행 금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개발지역내에 있는 공·폐가의 철거가 완료되어 철거 준공되었거나 순환버스의 이용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순환버스의 운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폐지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7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6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다.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로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 및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제2조

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 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7. 국가 또는 구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9조(보훈단체 비용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정신과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제9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훈복지)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와 그 소속기관 및 구 지방공기업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예산 범위 내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 당 : 매월 3만원 이내
2. 위로금 : 1회 20만원 이내

제12조(수당의 신청) 제11조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4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제15조(위로금 신청 등) ① 위로금 신청 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 | | 처리기간 10일 |
| 수급권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사망일자 | | | |
| | 지급대상유형 | | |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수급권자와의 관계 | | | |
| | 지급기관 (예금계좌) | | | |
| <p>「인천광역시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 | | | |
| <p>구비서류</p> <p>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p> <p>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p> <p>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p> <p>4.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p> | | | | 수수료 |
| | | | | 없 음 |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 지급 일시 | 지 급 대 상 자 | | | | 지 급 내 역 | | |
|----------|-----------|------|----|-----|---------|-----|------|
|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종 류 | 은행명 | 지급계좌 |
| | | | | | 수 당 | | |
| | | | | | 사망위로금 | |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4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 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 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8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2. 7.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검암 1지구 지구단위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1. 개요

- 명칭 : 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5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구역명 | 위치 | 면적(m ²) | 비고 |
|------------------|--------------------------|---------------------|----|
| 검암 1지구 지구단위계획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5번지 일원 | 661,144.5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별첨(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 게재 생략)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 게재 생략)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

: 별첨(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 게재 생략)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별첨(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 게재 생략)

2. 지형도면 : 별첨(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 게재 생략)

□ 검암 2지구 지구단위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개요

- 명칭 : 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06-1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구역명 | 위 치 | 면 적(m ²) | 비 고 |
|-------------------|----------------------|----------------------|-----|
| 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구 검암동 506-1번지 일원 | 408,826.0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별첨(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 게재 생략)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 게재 생략)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 : 별첨(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 게재 생략)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별첨(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 게재 생략)

2. 지형 도면 : 별첨(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716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별첨 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의 내용과 같이 등록·사용함을
공고합니다.

2012. 7.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등록 사유

- 청라동 분동에 따른 청라 1. 2동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12년 7월 9일

3. 전자이미지 등록 인영

“별첨 참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인영

| 전자이미지 공인명 | 규격(cm ²) | 인영 | 비고 |
|--------------|----------------------|--|--|
| 청라1동장인 | 2.1×2.1 |  | 전자결재시스템 (온나라)등록 |
| 청라2동장인 | 2.1×2.1 |  | " |
| 청라1동장인/민원전용 | 2.1×2.1 |  | 도로명주소대장 발급·열람을 위한 국가정보시스템 (KAIS) 등록 |
| 청라2동동장인/민원전용 | 2.1×2.1 |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717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1.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에 의거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 공고 하오니 해당 차량소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전 또는 자진폐차)하여 주시고 (차량 내 모든 물품, 비품 도 강제처리 됨)또한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 압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폐차)처리됨은 물론 차량소유자 또는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2조(20-150만원 범칙금)에 의거 통고처분 할것이며, 또한 동법제81조 제1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의거 관할검찰청에 송치 하게됩니다.
3. 또한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않을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2년 06월 27일 ~ 2012년 07월 10일

나. 대상차량 : 따로붙임(08고6099외4건)

다. 강제(폐차)처리시기 : 2012년 07월 10일 이후

라. 강제(폐차)처리장소 : 관내 폐차장

마.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 공고일로 부터 만료일까지.

바. 문 의 처 : 서구청 교통행정과 (☎ 032-560-4962)

붙 임 :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내역 .끝.

2012년 06월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 명령 번호 | 차량번호 | 차종 | 소유주 | 소유주 주소 |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
|----------|---------------|---------------|-----|-------------------------|---|
| 150 | 08고6099 | 슈마 | 유형환 | 인천 남구 갈파로27 번길70, A동 | 인천남구청[교통민원,세무],인천시 청[세정,교통관리],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남동구청[교통행정],권 선구청[경제교통] |
| 163 | 인천7도 3527 | 봉고 더블캡 | 유무상 | 인천 서구 가정로112 번길 | 인천동구청[건설교통],부평구청[환 경위생,교행],계양구청[교통행정], 영등포구청[교통행정],인천서구청 [교통행정,교통민원,환경보전,세무] |
| 164 | 번호미상 | CT100 오토바이 | 미상 | 미상 | |
| 170 | 63가4740 | EF 쏘나타 | 박동추 | 인천 서구 강남로33 번길19,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서부지사[징 수부],인천서구청[세무,교통행정], 남동구청[교통행정] |
| 177 | 경기40라 3759 | 쏘나타투 | 차종진 | 평택시 송탄로332, B동 | 수원지방법원사건97카단2218[이용 재],수원지방법원사건97카단 4250[박찬진],송탄출장소장[송산, 송징,송세],평택시청[차등],용산구 청[교지],마포구청[교지],광진구청 [교지],평택경찰서[교통],동작구청 [교지],동대문구청[교관],국민건강 보험공단평택지사[징급],수원지방법 원평택지원2002카단2072[현대캐피 탈주]인천남구청[교통민원],계양구 청[교통행정],인천서구청[교통행정]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719호


폐기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폐 기 사 유 : 관련조례 폐지
2. 폐기 연월일 : 2012. 6. 20
3. 폐기공인명 및 인영

| 공 인 명 | 규 격(㎠) | 공인인영 | 비 고 |
|-----------------------------------|-----------|--|-------------------------|
| 인천광역시서구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의인 | 2.4 × 2.4 |  | 관련조례 폐지 (2003.10.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725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2012. 7. 1 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감사담당관 신설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12년 7월 2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조공인 인영

| 연 번 | 신조공인명 | 규 격 | 인 영 | 비 고 |
|-----|--------------------------|---------|--|-------------------------------|
| 1 | 인천광역시서구 감사담당관분임경리관인 | 2.0X2.0 |  | 2012.7.1 조직개편 (감사담당관신설) |
| 2 | 인천광역시서구 감사담당관분임물품출납원인 | 1.8X1.8 |  | " |
| 3 | 인천광역시서구 감사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 1.8×1.8 |  | " |
| 4 | 인광역시서구 감사담당관분임징수관인 | 2.0X2.0 |  | " |
| 5 | 인천광역시서구 감사담당관물품운용관인 | 2.0X2.0 |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731호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시하오니 정정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2.1.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94-1외 1호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의 산정대지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정정내역 참조
4. 가 격 통 지 등 : 정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의 정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각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73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공사완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0-64호(2010.12.06)로 실시계획 고시한 심곡동 325-1번지 일원의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연희노인문화센터)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2. 7.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 【명칭】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공사
3.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2,480.3㎡
 - 연 면 적 : 2,505.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5. 사업기간 : 2011.02.07 ~ 2012.03.03